**자문연구 용역 계약서**

0000에 위치한 0000주식회사(이하 '갑')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(이하 '을', 용역 책임자 000 교수)는 다음과 같이 자문연구 용역 계약(이하 ‘본 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**제1조(계약의 목적 및 범위)**

① 본 계약은 ‘갑'이 ‘을’에게 아래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, ‘을’이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- 자문 분야: 000

② 본 계약에 따른 자문 용역은 ‘을’로 하여금 특정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의 채택, 거래, 구매, 판촉 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‘갑’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명시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, ‘을’은 해당 자료의 준비를 위해 충실히 협조하기로 한다.

1. 자문기관으로 ‘을’을 선정한 사유

2. 자문 내용(결과물)

3. 자문 내용의 활용

**제2조(수행방법)**

‘을’이 ‘갑’에게 용역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견서 제공

2. 전화, 이메일 기타 방법

3. 그 밖에 ‘갑’이 요청하여 상호 합의한 방법

**제3조(계약기간)**

본 계약기간은 계약 체결일로부터 2000년 00월 00일까지로 한다. 단, ‘갑’과 ‘을’ 쌍방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4조(용역비 및 지급방법 등)**

① 본 계약에 의하여 ‘갑’이 ‘을’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의 총액은 일금 (한글)000원 정(\000,000,000, 간접비 \00,0000 포함 \_ 부가가치세 별도)이며, 아래와 같이 ‘을’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
- 입금 계좌: 신한은행 100-014-257993, 서울대학교병원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금액(원) | 입금 시기 |
| 1차 |  |  |
| 2차 |  |  |
| 3차 |  |  |

② 용역비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및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의 수준 및 정도, ‘을’의 전문성, 지식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③ ‘을’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(이하 ‘여비’)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거쳐 정한다.

**제5조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**

‘갑’과 ‘을’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명칭 및 상호의 사용)**

‘갑’과 ‘을’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호간에 제공하여 소유하게 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, 판매촉진,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'갑' 또는 '을'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
**제7조(비밀유지)**

① ‘을’은 본 계약을 통해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‘갑’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여기서 비밀정보는 자문 용역과 관련하여 ‘갑’이 ‘을’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 및 연구 수행 결과로 얻은 정보를 포함한다.

② 본 계약에 따른 자문 용역이 완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, ‘을’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았거나 자문 용역의 결과로 생성된 모든 정보를 ‘갑’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계약 변경)**

’갑’과 ‘을’은 서면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.

**제9조(계약 해지)**

① ‘갑’과 ‘을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, 상대방이 시정요구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

2. 용역책임자가 더 이상 본 용역의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, ‘갑’과 ‘을’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후임자를 찾지 못한 경우

3. 기타 원활한 자문 용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본 용역이 중단된 경우, 쌍방은 잔여 연구비를 계약이 해지된 날 또는 본 연구가 중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한다. 단, 기 입금된 간접비는 반환되지 않는다.

③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‘갑’과 ‘을’은 제7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.

④ 기타의 경우는 계약의 해지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원칙에 의한다.

**제10조(손해배상)**

① ‘갑’ 또는 ‘을’이 본 계약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할 경우, 계약을 위반한 일방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‘갑’ 또는 ‘을’은 천재지변, 폭동,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이나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.

**제11조(계약의 효력)**

본 계약은 ‘갑’과 ‘을’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.

**제12조(계약의 해석)**

본 계약의 내용 또는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‘갑’과 ‘을’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13조(관할법원)**

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되며,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로 인한 분쟁 발생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'갑'과 '을'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한 후 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|  |  |
| --- | --- |
| '갑'주 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00-0기관명: 0000 주식회사대표자: 대표이사 000 (인) 날 짜: 년 월 일 | '을'주 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기관명: 서울대학교병원대표자: 병원장 김연수 (인) 날 짜: 년 월 일용역책임자: 000 (인) 날 짜: 년 월 일 |